

괴산군수 선거공약 관리 지침

[시행 2026.02.13]
(일부개정) 2026.02.13 훈령 제370호

관리책임부서명 : 기획팀
관리책임전화번호 : 830-3013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군수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 계획의 수립, 추진상황의 점검 등 공약사항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공약사항의 확정 및 관리체계) ① 공약사항의 확정과 관리체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공약사항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선거공약 자료를 기본으로 군수가 확정한다.<개정 2026.2.13. 훈령 제370호>
2. 공약사항 추진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지정은 공약 확정 후 30일 이내에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3.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는 기획홍보과에서 수행한다.<개정 2024.3.15. 훈령 제354호>
4. 소관 공약사항에 대한 관리는 과장·사업소장이 수행하고, 단위사업별 주관팀 및 협조팀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한다.<개정 2014.10.31. 훈령 제288호, 2024.3.15. 훈령 제354호>

② 기획홍보과장은 공약사항에 대하여 임시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부서(이하 "추진부서"라 한다)에 실천 가능 여부 등 의견(별지 제1호서식)을 들어야 한다.<개정 2024.3.15. 훈령 제354호>

③ 추진부서에서는 실천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법률적 검토 (조례 제·개정 포함)
2. 임기 내 실천 가능 여부
3.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자원 조달 계획
4.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 계획으로 추진 가능 여부 등

④ 기획홍보과장은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 조정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관리 코드번호를 부여한 공약사항을 추진부서에 시달한다.<개정 2024.3.15. 훈령 제354호>

제3조(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) ① 추진부서의 장은 추진부서로 지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공약사항별로 연도별 자원투자계획을 포함한 실천계획(별지 제2호서식)을 수립한다.<개정 2026.2.13. 훈령 제370호>

1. 공약취지와와의 적합성
2. 사업의 실현 가능성
3.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
 - 가. 광범위한 자료, 지식, 경험 등을 활용
 - 나. 관련부서, 전문연구기관 및 주민각계의 의견수렴,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비교검토 및 조정
4. 국가 및 도 계획과의 연계와 조화
5.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
6. 예견되는 문제점 검토 및 대책
7.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및 신규 투자사업은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
8. 법제, 조직 및 인력이 필요할 시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

② 기획홍보과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한 총괄적인 투자계획과 자원조달계획을 수립한다.<개정 2024.3.15. 훈령 제354호>

③ 기획홍보과장은 각 과·사업소의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시달한다.<개정 2024.3.15. 훈령 제354호>

④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·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 주관 추진부서장이 협조부서 및 기획홍보과장과 협의하여 그 사유 및 근거서류를 첨부, 군수에게 보고한 후 공약사업 평가·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.<개정 2024.3.15. 훈령 제354호., 2026.2.13. 훈령 제370호>

⑤ 추진부서의 장은 확정된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의거 매년 초에 공약사항별로 당해연도 세부시행계획(별지 제3호서식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4조(추진상황 점검) ①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상황을 매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그 추진상황(별지 제4호서식)을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3.15. 훈령 제354호>

② 공약사항의 추진상황 분류기준은 각 호와 같다.

1. 완료 : 현시점 공정완료 및 최종 목표수치 달성된 사업

2. 이행 : 연간 반복사업으로 현시점 계획대비 실적 달성된 사업

3. 정상추진 : 단일사업(건설, 도로 등)으로 연차별 공정에 의해 정상 추진되어 완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준공되는 사업

4. 보류(부진) : 여건상 추진시기가 미루어진 사업 및 연차별·분기별 계획대비 실적이 미흡(당해계획대비 60퍼센트 미만의 실적)한 사업

5. 추진불가(중단, 미착수) : 계획, 여건, 법률 등의 변경, 타 사업으로 전환에 의하여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거나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한 미착수 사업

③ 기획홍보과장은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업, 문제 사업,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 또는 합동으로 현지 확인점검을 하고, 보완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시정요구를 받은 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3.15. 훈령 제354호>

제5조(공약사항 관리카드 작성) 추진부서의 장은 확정된 이행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카드(별지 제5호서식)를 작성 비치하며, 매 분기마다 추진 실적을 정비하여야 한다.

제6조(추진상황 공개) 기획홍보과장은 공약추진상황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3.15. 훈령 제354호>

<신설 2026.2.13. 훈령 제370호>

제7조(공약사업 평가·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군수는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 및 자문을 위해 과산군 공약사업 평가·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공약사업 총괄검토 및 실천계획 수립·변경에 대한 심의

2. 공약사업 이행사항 평가 및 자문

3. 공약사업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자문 및 건의

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선정된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구성 방법에 따라 임기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2.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
3. 위원회의 운영 취지, 목적,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
4.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

<신설 2026.2.13. 훈령 제370호>

제8조(공약사업 평가·자문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전체회의를 실시한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④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「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.

부칙<2014.10.31. 훈령 제288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부터 ⑭까지 생략

⑮ 괴산군수 선거공약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 중 "단위사업별주관담당"을 "단위사업별주관팀"으로 "협조담당"을 "협조팀"으로 한다.

부터까지 생략

부칙<2020. 3. 20. 훈령 제20호>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.

부칙<2024. 3. 15. 훈령 제354호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19개 훈령의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>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.

부칙<2026. 2. 13. 훈령 제370호>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.